

의안번호	제580호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충청북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

발의자	김정일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4년 5월 30일

# 충청북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

(김정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80
----------	-----

발의연월일 : 2024년 5월 30일

발의자 : 김정일, 이상정, 박봉순,  
안지윤, 안치영, 이상식,  
조성태

## 1. 제안이유

- 정기적인 혈액 및 복막투석으로 사회적·경제적·심리적 어려움 등을 겪고 있는 도내 신장장애인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을 통해, 신장장애인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안 제1조, 제2조)
- 신장장애인 지원 사업 규정(안 제5조)
  - 신장장애인 의료비, 이동, 건강관리 및 재활 지원사업 등
- 의료비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 규정(안 제6조~제8조)
  - 혈액 및 복막투석비, 이식검사비, 혈관 및 이식수술비 중 의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 3. 조례안 전문 : 붙임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 비용추계 : 붙임
- 협의 : 충청북도 장애인복지과
- 조례안 예고 : 예고 대상(의회홈페이지 게시 예정)

## 충청북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신장장애인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신장장애인”이란 신장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혈액 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신장장애인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장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신장장애인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장장애인 조기발견 및 상담 지원사업
2.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3. 신장장애인 이동 지원사업
4. 신장장애인 건강관리 및 재활 지원사업
5. 신장장애인 인권향상 및 인식개선 사업
6. 신장장애인 실태조사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의료비 지원대상) 충청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그 밖에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7조(의료비 지원내용) 도지사는 혈액 및 복막투석비, 이식검사비, 혈관 및 이식수술비 중 의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본인 부담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8조(의료비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의료비 지원기준, 지원절차, 지급방법, 환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위탁)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5. 27., 2015. 6. 22., 2017. 2. 8.>

② 삭제 <2017. 2. 8.>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2. 8., 2017. 12. 19.>

④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7. 12. 19.>

⑤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7., 2015. 6. 22., 2015. 12. 29., 2017. 12. 19.>

⑦ 삭제 <2021. 7. 27.>

⑧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신설 2024. 2. 13.>

⑨ 제1항, 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 위원회, 등록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5. 27., 2015. 12. 29., 2017. 2. 8., 2021. 7. 27., 2024. 2. 13.>

##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4. 13.>

###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제2조 관련)

#### 9. 신장장애인(腎臟障礙人)

신장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 신장장애인의 사회적·경제적·심리적 어려움 지원사업 추진
- 도내 신장장애인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 2. 비용 발생 요인

- 신장장애인 지원사업 추진 소요경비
  - 신장장애인 조기발견 및 상담, 의료비, 이동, 건강관리 및 재활, 인 권향상 및 인식개선 지원사업 등
  - 신장장애인 실태조사 소요경비

## 3. 관련조문

- 안 제5조(지원사업)
- 안 제6조(의료비 지원대상)
- 안 제7조(의료비 지원내용)

## 4.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 : 2024년~2028년 (5년간)
  - \* 예산 확보 상황 및 구체적 시행 가능한 사업에 한해 비용 추계

### 나. 추계 결과 : 연 1,699,744천원

- 신장장애인 조기발견 및 상담 지원사업(기추진, 도비 100%)
  - 38,415천원 × 1식 = 38,415천원
  - \* '24년 당초예산 기준 / 매년 4% 증액
- 신장장애인 이동 지원사업(기추진, 도비 100%)
  - 38,714천원 × 1식 = 38,714천원
  - \* '24년 당초예산 기준 / 매년 4% 증액

-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도비 40%, 시군비 60%)
  - 17명 × 11개 시·군 × 125천원 × 12개월 = 280,500천원
    - \* 지원대상: '24년 청주시 의료비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 \* 지원금액: 월평균 의료비 약 25만원에 대한 50% 지원 기준
- 신장장애인 인권향상 및 인식개선 사업(도비 100%)
  - 10,000천원 × 1식 = 10,000천원
- 신장장애인 실태조사(도비 100%)
  - 30,000천원 × 1식 = 30,0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시군비

##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출		77,129	400,713	403,921	407,256	410,725	1,699,744
신장장애인 조기발견 및 상담지원사업		38,415	39,951	41,549	43,210	44,938	208,063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	280,500	280,500	280,500	280,500	1,122,000
신장장애인 이동 지원사업		38,714	40,262	41,872	43,546	45,287	209,681
신장장애인 인권향상 및 인식개선사업		-	10,000	10,000	10,000	10,000	40,000
신장장애인 실태조사		-	30,000	30,000	30,000	30,000	120,000
재원 조달		77,129	400,713	403,921	407,256	410,725	1,699,744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77,129	232,413	235,621	238,956	242,425	1,026,544
지방채							
기금							
특별회계							
시·군비		-	168,300	168,300	168,300	168,300	673,200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